

우송대학교 교통 안전관리규정

제 정 2021. 6.

제1조 (정의) 이 규정에서 “교통안전관리”란 교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.

제2조 (목적) 이 규정은 교내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 방지 및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며 대학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,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등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적용범위) 이 규정은 교내 도로에 적용하고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이륜자동차, 자전거, 개인형 이동장치 등(이하 교내 교통수단이라 함.)의 이용자 및 보행자에게 적용한다.

제4조(교내 교통수단의 등록) 교내 교통수단 중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(학내 구성원으로 한정함)는 운행 전 개인 소유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학교 관리팀 종합상황실에 등록하고 운행하여야 한다.

제5조(통행의 금지 및 제한) 교내 교통수단 중 차량 및 이륜자동차는 보행자 안전구역(통행금지 제한구역)에 출입할 수 없으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에는 지정된 주차공간에 주차하여야 한다. 단,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경우 별도의 지정된 주차공간에 주차 후 출입하여야 하며 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6조(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) ①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하여 보행자, 다른 차량 및 본교 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한다.

②교내 교통수단을 교내에 주차할 시 보행자나 다른 교통수단의 운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주차하여야 한다.

제7조(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) ①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시속 20km/h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.

②교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.

③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앞차와의 안전거리 확보, 소음유발, 무분별한 주차, 급출발, 이동 시 휴대전화 및 이어폰 사용을 금지, 동승자 탑승, 한손 운전 등을 금해야 한다.

④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안전모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항상 주의를 살피며 운행하여야 한다.

⑤개인형 이동장치를 소지하고 학내에 있는 건물(강의실 및 실험실 포함)에 출입할 수 없다.

제8조(운행속도제한) 모든 교내 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시속 20km/h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.

제9조(통행로) 교내 교통수단은 상호간의 도로 통행을 보장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.

제10조(보행자의 보호) ①교내 교통수단은 교내 도로에서 운행 시 항상 보행자에게 양보하여 운전하여야 하며 보행자는 통행에 대한 우선권을 가진다.

②교내 교통수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가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.

제11조(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) 교내에서 교내 교통수단 등이 운행할 수 있는 구간에는 교통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제12조(운전자의 의무) ①누구든지 음주한 상태에서 교내 교통수단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교내 교통수단의 운전자는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피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교내 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,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, 도로의 교통상황과 장치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3조(안전사고 발생 시의 조치) ①교내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관련자와 목격자 등은 사상자 구호와 현장보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관련자, 목격자 등은 사고발생 장소, 사상자의 수 및 부상정도, 재산 피해 사항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대학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.

③ 대학관리자는 안전사고 접수 시 사고관련자 또는 신고자에게 사고현장을 원형대로 보존토록 하고 안전사고 보고서 및 안전사고 진술서 등을 작성·징구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4조(안전사고의 조사) ①대학관리자는 총장에게 안전사고 발생사실을 보고하고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체 없이 조사를 하여야 한다.

②현장 조사 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조사 하여야 한다.

(사고발생일시, 장소, 피해상황, 신고사유, 발생경위, 신고자, 사고당사자)

제15조(지도단속) ①교내의 원활한 교통안전관리를 위하여 지도 단속반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지도 단속 시 보호 장구 착용, 규정 속도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현장 시정조치 할 수 있다.

제16조(주차위반에 대한 조치) ①교내 교통수단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교내 교통수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
②교내 교통수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경우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교내 교통수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③교내 교통수단 중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위반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관계자에 의하여 압수될 수 있다. 이때,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잠금 장치는 제거될 수 있으며, 견인으로 인하여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대학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제17조(안전교육 홍보) 교직원 및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캠페인 및 홍보활동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18조(위반 시 제재) ①교내 규정 속도를 매년도 기준으로 1회 위반하면 계도조치 및 소속 기관(부서, 학과 등)에 통보하며, 2회 위반하면 1개월간 정기차량 등록을 정지하고,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정기차량 등록을 1개월 이상 해지할 수 있다. 외부 차량은 3회 이상 위반하면 출입을 통제한다.

②교내에서 「교통사고처리특례법」에 따른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자는 당사자의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.

③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 매학기 기준으로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 착용 1회 위반하면 계도조치, 2회 이상 위반하면 계도 조치 및 부서(학과)에 통보하며, 3회 위반하면 당사자의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.

제19조(협의회 구성 및 운영) ①대학관리자는 대학 내에서 안전질서 유지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대학관계자로 구성되는 협의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.

제20조(주관부서)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는 관리과, 재난안전실, 학생복지처에서 관장한다.

제21조(단속요원) 교통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로 단속할 직원 등을 지정할 수 있다.

제22조(운영세칙) 기타 교통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.